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경훈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443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1. 31.
- 라. 회부일자: 2023. 2. 9.

2. 제 안 사 유

-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의 별다른 기능이 없으므로,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(안 제6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용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용자 대상자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, 최근 5년간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, 일 년에 한 번 개최하여 육성자금 용자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(연평균 7억8천만원)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,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, 별도의 의견은 없음.

<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 개최현황>

| 연도 | 개최횟수 | 개최방법 | 위원수 | 참석인원 | 회의안건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8 | 1 | 대면 | 7 | 4 | 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4개 업체, 8억원) |
| 2019 | 1 | 대면 | 7 | 4 | 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5개 업체, 8억원) |
| 2020 | 1 | 서면 | 7 | 7 | 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4개 업체, 6억원) |
| 2021 | 1 | 대면 | 7 | 4 | 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3개 업체, 5억원) |
| 2022 | 1 | 서면 | 7 | 7 | 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4개 업체, 10억원) |

<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산·구조문대비표>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~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2차레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,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| 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|